

제주지방법원 2024. 10. 23 선고 2024가단633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제주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3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26,761,691원 및 그 중 26,029,413원에 대하여 2023. 8. 28.부터 2024. 7. 1.까지 연 8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23. 3. 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3. 3. 7. 접수 제8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.

판사 김은성

별지